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II>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향연 (SYMPOSIUM)

민간기업들이 하나 둘 사회적 가치를 말하고, 로펌과 법률가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사회적 기금과 사회적 금융의 투명한 운영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다.



☎ 최유경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사회적가치법제팀장
✉ ykchoe@klri.re.kr

I.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사회적 가치의 역할

자본주의 체제가 비교적 성공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뜻하지 않은 부산물(副産物)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헌법과 법률이 열거한 자유권과 사회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실업과 빈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환경파괴,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의 골은 깊어만 간다. 소득의 재분배나 복지정책과 같은 응급 처방도 문제의 본질에 가 닿지는 못했다. 급기야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 결과 책임의 비용을 측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기발한 정책이 제도화되기도 했다. 과연 시장(市場)에서의 가격이 매겨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사고 팔’아도 괜찮은 것인가.¹⁾

2020년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 전역을 휩쓸면서 214개국에서 약 5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의 수는 34만 명에 달한 지금,²⁾ 인류는 생명과 건강, 안전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해 거대하게 움직이던 경제의 시계마저 멈춘 상태다.³⁾ 지난 10주 간 미국에서만 약 4,08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5월 기준 실업률은 19.8%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마저도 더 낮아질 전망이라 한다.⁴⁾ 이 같은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가치(價値)를 이제나마 반추(反芻)하게끔 한다.

II. 가치(價値) v.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가치(價値)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그 무엇에 대한 생각’을 뜻한다.⁵⁾ 한 사회의 가치는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 변화, 발전, 소멸한다. 별다른 저항 없이 통용되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양립하기 힘든 가치가 혼재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는 충(忠), 효(孝), 예(禮)와 같은 가치보다 자유와 평등, 효율성과 합리성과 같은 가치에 익숙해졌

지만, 이들은 모두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이기도 하다.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관한 담론이 시작된 것은 제법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⁶⁾ 그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막연히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다 같이 지향해야 마땅한 무엇’쯤으로 이해되고 있는 정도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개념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지상주의(Market Triumphalism)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헌법(憲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상태를 전제로 대기업과 주주 이익의 극대화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원색적 욕망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⁷⁾ 여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경제나 공유가치 창출(CSV), 포용성장과 정부 혁신 등의 개념을 더하면 좀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III.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 성과와 계획

2017년 출범 이래 정부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첫째, 공공부문에서의 사회

- 1) 마이클 샌델(안기순 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2012)
- 2) <https://coronaboard.kr/> (마지막 방문: 2020. 5. 23.)
- 3) 2020년 5월 31일 기준
- 4) 중앙일보(2020.5.13.일자), “IMF 예상보다 더 나빠, -3.0% 세계 경쟁률 전망치 한 번 더 내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75373> (최종방문: 2020.5.14.)
- 5) 차재호,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관 변화와 가치에 관한 명제의 도출”, 심리과학 제3권 제1호, 1994, 1-4면. 이 글에 따르면 가치란, 바람직한 것에 대한 생각(the concept of the desirable)이나 특정한 행위양식 또는 존재의 목표상태가 반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존재 목표 상태 보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더 낫다는 지속적 신념을 의미한다.
- 6) 숄페터, *On the Concept of Social Value*(1909)
- 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 8) 2020년 1월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참고

적 가치의 입법화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자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조직, 재정, 인사 평가체계를 활용해 정부 주도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 반면, 후자는 인권, 생명, 건강, 노동, 사회통합 등을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비롯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회적 경제, 참여적인 시민공동체 역량 강화에 이르는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의 전방위적인 민간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 사업은 집단 지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공론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대표적으로 웹스크래핑(Web Scrapping)을 적용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제정된 법의 전소 생애 주기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⁹⁾ 사회적 가치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게 될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 방안을 연구한다.¹⁰⁾ 그 외에도 협동조합법제 및 사회적기업법제와¹¹⁾ 공공사회성과보상사업을 위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¹²⁾

나아가 사회적 가치 이슈페이퍼를 통해 사회적 가치 목록으로서의 사회통합, 안전과 재난기본소득, 상생협력, 주거권, 주민참여, 환경, 제3섹터의 파트너십 등을 섬세하게 다루는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일자리창출과 고용, 프라이버시, 사회적 금융 등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형식으로 출간할 예정이다.¹³⁾



사회적 가치 ISSUE BRIEF(1) - 도시공원일몰제
2020.6 출간예정

지난 5월 개최한 『제4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 정량화와 평가 방법론”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와 한계점을 짚어 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학, 경제학, 회계학,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 측정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원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단일한 측정 기준 보다 입체적이면서 자율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사회적 가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¹⁴⁾ 『제5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며,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실태와 법률가의 역할”(가제)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와 향후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IV. 제21대 국회에서의 사회적 가치 입법 전략과 전망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담론이 추상적인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채로운 사회적 가치 목록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는 법학 이외에도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온 연구 성과를 한데 모아 융·복합적으로 논의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기초·정책 연구들을 통해 법률 간 체계 정합성과 입법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법률(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하위법령 체계를 유기적으로 정비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과 인근 국책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과 학제 간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자들은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시민(市民)과 소비자, 제3섹터 등에서 각양각색의 경제·사회 주체들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사례를 발



제4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 5월 21일(목)



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해 왔다. 자칫 정형적인 경영평가의 틀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일정한 범주로 제한하거나 몇몇 유형화된 사례만 반복적으로 양산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정부나 대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층적인 경제·사회적 주체들의 과감한 참여와 도전을 기대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부처部處 간 소통과 통섭적·유기적인 협치의 묘미 또한 발휘할 때이다.

V. 사회적 가치 향연을 위한 제언

사회적 가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효과 창출의 주기가 형성될 때까지 중·장기적인 전략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맞이할 크고 작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더딘 것 같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외에도 최근 소셜 벤처를 자칭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

세가 눈에 띈다. 민간기업들이 하나 둘 사회적 가치를 말하고, 로펌과 법률가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금과 사회적 금융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활용 방안 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임팩트 투자의 활성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또한 흥미롭다. 이렇게 하나 둘씩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슴에서 꺼내어 털어놓는다면, 스승과 제자가 모여 에로스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격정적으로 나누던 <향연>¹⁵⁾의 한 장면이 펼쳐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날. 아니면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 9) 최유경·김두일,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웹 스크래핑(Web Scrapping) 기법을 통한 현행법상 사회적 가치 동향 분석』(2020.10. 예정)
- 10) 최유경·김정옥,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분석』(2020.10. 예정)
- 11) 김용진·송영선, 『사회적 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제 분석』(2020.06. 예정) 및 김혜원·이동훈, 『사회적 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법제 분석』(2020.09. 예정)
- 12) 나재준,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I)- 공공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2020.09. 예정)
- 13) 『사회적 가치 ISSUE BRIEF (1) - 도시공원일몰제』는 2020. 6. 중 출간 예정
- 14) 한국법제연구원 제4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2020.5.21.) 자료집 참고
- 15) 플라톤(강철웅 역), 『향연』, 이제이북스(2014)